

GET THE SPIRIT OF LOGISTICS INNOVATION

[
물류표준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홍상태 연구원 (물류연구원)
]

물류표준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 상태(한국물류협회 물류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I. 서론

II. 물류표준화 정책추진의 동향

1.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 주요 정책
2. 일본의 물류표준화 주요 정책

III. 물류표준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제도(안)

1. 개요
2. 물류표준 인증절차
3. 물류표준인증 기준내용

IV. 결론

I. 서론

물류가 강조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한 결과 물류가 생산비를 앞지르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물류의 활동인 포장, 보관, 하역, 수송 등 물류제반 과정에 이를 연결시켜 주는 정보부문에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각 분야별 단체들 간에 정보교환 및 특정사안에 대한 의사 및 행동통일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각국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간의 이합집산도 서슴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양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은 자국 또는 협력국을 중심으로한 국제표준화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교역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자국을 중심으로한 물류시스템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배경과 국제물류 효율화 측면(물류비절감, 물류서비스 수준의 향상)에서 볼 때 물류표준화 추진은 더욱더 요구될 것이다.

특히, 표준파렛트를 대상으로한 물류기술의 집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또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파렛트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표준화를 본다면 유럽은 90%, 미국 55%, 일본 40%이며, 우리나라는 약30%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표준파렛트의 보급 확산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중심으로 물류표준화는 상품포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파렛트 적재형태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일관물류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일관물류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품포장단위, 파렛트, 하역기기, 보관설비, 운송기기 등이 표준화가 요구된다.

1) 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 생산 및 사용자 실태조사, 2003. 9.

따라서 물류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유통되고 있는 관련 장비 및 설비 중 한국산업규격의 유닛로드시스템(ULS)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T-11형 표준파렛트와 정합화할 수 있는 표준설비 임을 인증함으로써 물류표준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시켜 물류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류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물류표준인증 기준을 제정토록 한다.

II. 물류표준화 정책추진의 동향

1.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 주요 정책

1) 물류표준화 추진 현황

물류시설 및 장비의 이용효율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적인 물류표준화를 추진 및 확대를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ULS 규격에 맞는 농산물 포장부문 2,800억원('01~'04), 장비부분인 광폭차량화, 지게차, 파렛트에 490억('01~'04)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표준파렛트 및 파렛타이저, 컨베이어, 랙 등 표준물류기 생산 및 도입업체에 220억원('01~'02),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하여 지게차, 냉동탑차, 표준파렛트 구입자금지원을 125억원('01~'04), 건설교통부는 냉동차량의 광폭화(2,280mm) 및 표준파렛트 구입자금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물류표준화 시책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산업자원부에서는 표준파렛트화와 정합화 되는 외부포장 모듈화 치수를 현행 69종에서 20여종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물류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ULS통칙상의 물류표준화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인증마크부여 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물류표준화 추진 사업과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는 물류산업을 산업분류상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파렛트 임대업 및 화물취급 장비임대업에 대하여 검토, 추진 중에 있다.

3) 각 부처별 물류표준화 내용 및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주요 6개 부처에서 국가물류표

준화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 계획의 체계

구 분	목 표	표준화 내용	대 상	행정체계 구축
건설교통부	유닛로드시스템 의 활성화 및 e-Logistics 구 현 기반확충	상하역 장비, 보관시설 수송적재함	물류업체	- 관련부처 공동물류 표준화 실태조사 및 분석 - 부처별 협의 및 추진 목표치 설정 - 목표 설정에 따른 정책추진 - 사후평가
산업자원부		상하역 장비, 포장규격, 파렛트, 전자카달로그, 바코드 등 산업표준규격	제조, 유통업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시스템의 표준화	각 부처, 업체	
농 립 부		포장규격, 파렛트	생산자	
해양수산부		포장규격, 파렛트	생산자	
조 달 청		포장규격	조달업체	

2. 일본의 물류표준화 주요 정책

1) 물류표준화 추진 현황

(1) 표준화대상 분야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을 중심으로 물류기술전문위원회를 결성하여 물류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포장, 하역, 운반, 수송, 보관 등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어, 취급의 표시마크, 파렛트, 컨테이너 등의 치수, 강도 등의 기술적 기준, 하역, 운반 기기의 안전기준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관리하고 있다.

물류의 주요 기술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장자재(플라스틱제 밴드, 종이, 플라스틱제 필름 등)
- ② 용기(골판지상자, 드럼 캔 등의 금속용기)
- ③ 파렛트(목재, 플라스틱제, 금속제, 지제, 산업용 랙)
- ④ 컨테이너(차량, 철도, 선박, 항공, 플렉시블 컨테이너)
- ⑤ 산업용차량(지게차, 무인반송차 등)

- ⑥ 크레인(천정크레인 등)
- ⑦ 운반기기(호이스트, 컨베이어, 자동창고 등)
- ⑧ 자동인식(바코드, 무선택 등)

2) 파렛트인증제도 도입

일본파렛트협회에서는 민간표준화 추진사업으로 파렛트 및 트럭 등의 품질성능에 대하여 공정한 인정을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보급촉진,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이익을 기여하기 위하여 파렛트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대상

본 제도에 의한 인정대상은 일본공업규격(JIS), 국제규격 및 (사)일본파렛트협회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제조된 파렛트 및 랙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목재파렛트
- ② 금속제파렛트
- ③ 플라스틱제파렛트
- ④ 시트파렛트
- ⑤ 종이제파렛트
- ⑥ 랙
- ⑦ 기타

(2) 인정기준 및 인정

제품의 인정기준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을 파렛트인정제도에 의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하여 협회가 심사를 받고 협회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인정위원회

(2)항에 대하여 심의검토를 위해 협회에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이 위원회는 (2)항에 대하여 심의검토 뿐만 아니라 회장의 자문, 본 제도의 운영에 필요로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자격 요건은 제품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을 갖춘자, 시험연구를 행한 기관의 직원, 사용자의 의견을 대표로 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및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된 자로 구성하며, 인정심사는 신청자의 공장 또는 작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

본 제도의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전문부회를 두고, 이 부회의 자격 요건은 제품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및 시험연구를 행한 기관의 직원, 제조업자 중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

본 제도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하는 제조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정의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정서의 유효기간 및 표시

① 인정서의 유효기간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일자의 다음달부터 시작하여 3년간으로 한다.

② 표시

제조업자는 제품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에 관한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고, 표시방법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인정의 취소

회장은 인정에 관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이 저하된 것, 부정적인 표시한 것, 기타 본 제도의 목적에 특히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한하여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취소장을 통지하는 동시에 공포한다.

인정유효기간의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은 인정유효기간의 종료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인정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

인정에 관련된 제품의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명칭 변경 시

② 인정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할 때

- ③ 인정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 명칭이 변경될 때
- ④ 인정에 관련된 제품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⑤ 인정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주요 기술적 생산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 ⑥ 인정에 관련된 공장에 있어서 제품생산을 중지하고자할 때 또는 장기(1년 이상)동안 생산중단 또는 재생산을 할 때
- ⑦ 인정에 관련된 제품에 관하여 제조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 ⑧ 합병할 때
- ⑨ 공업표준화제19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제25조2에 의거 승인 또는 외국에 있어서 그것에 준하는 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

(7) 기타

회장은 본 요강의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본 요강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Ⅲ. 물류표준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제도(안)

1. 개요

1) 법적근거

① 유통산업발전법제24조와 제61조

- 제 24 조(물류표준인증)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하나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규격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61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항에 물류표준인증 실시에 관한 권한을 인증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물류표준인증운용 요령

○ 인증기관장은 물류표준인증운용 (요령)을 제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물류표준인증운용(요령)에는 대상품목, 인증체계 및 절차, 평가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용어

① 물류표준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및 형상, 치수 및 구조 그리고 포장의 종류 및 형상, 치수 및 구조를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물류표준시설

화물의 운송 및 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이동 및 보관을 위하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에 설치된 랙,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의 표준시설로서 고정된 것을 말한다.

③ 물류표준설비

화물의 하역, 수송 등의 물류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렛트 트럭, 파렛트 화물운반차, 수송차량 등 자력 또는 타력으로 이동 가능한 표준설비를 말한다.

④ 물류표준기기

화물의 수송을 위한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등 포장용기와 물류정보처리를 위한 리더기, 디코더 등 정보기기로서 표준기기를 말한다.

⑤ 물류표준설비

물류표준시설, 물류표준설비, 물류표준기기를 일괄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물류시설, 물류설비, 물류기기 중 어느 한가지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물류설비라는 의미를 갖는다.

⑥ 물류표준인증마크

물류설비 중에서 표준설비임을 인증해 주는 표시를 말한다.

⑦ 물류표준인증기관

물류표준인증기준에 의하여 물류표준대상 설비(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를 심사한 후 물류표준인증설비로 인정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⑧ 제품검사위탁기관

인증기관장이 물류표준인증대상설비의 제품검사 업무를 위탁한 외부검사기관을 말한다.

2. 물류표준 인증절차

1) 기본 방향

① 물류표준인증절차

국가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의 인증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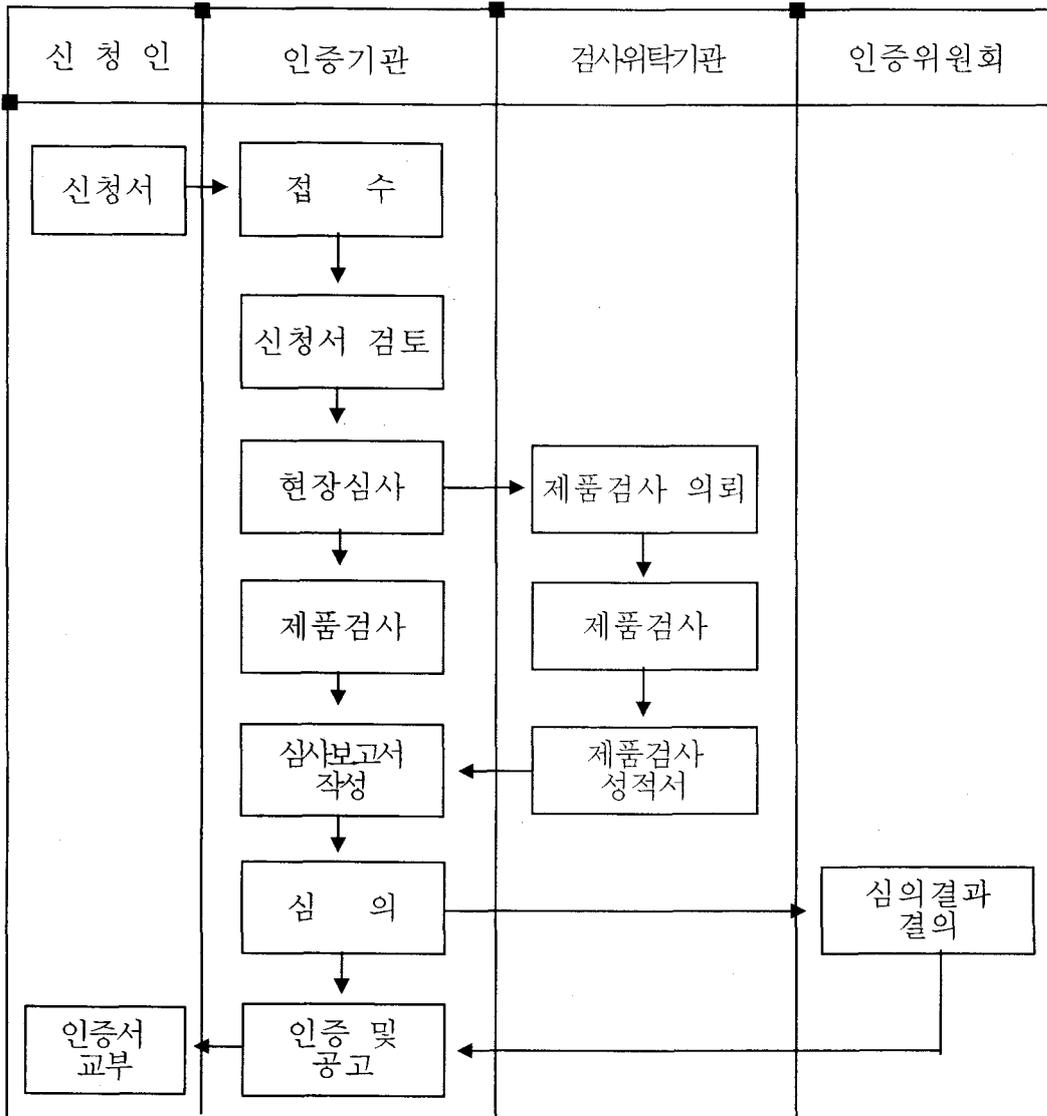
- 물류표준인증제도는 어디까지나 상위 인증제도인 국가표준 인증제도 또는 관련인증제도인 단체표준 인증제도를 준용한다.

② 업무수행 절차

○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신청서 (표 2)를 인증기관에 접수시키면 인증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현장(생산공장 또는 설치 및 사용장소)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제품검사는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위탁기관에 통보한다.

○ 현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물류표준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 결의를 얻어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한다.

(표 2) 물류표준인증 업무수행절차



2) 인증의 신청

① 신청자격

물류표준인증표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류표준인증대상 설비를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이러한 물류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한다.

② 신청서 접수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증기관은 물류표준인증표시 승인 신청서(표 3)를 접수토록 한다.

척 관련설비 그리고 KS 규격관련 물류설비에 의하되 수입대체, 수출증대 및 물류 표준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대상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표 4) 인증대상

기기명	기준치수	적용대상
파렛트	1100 1100	평파렛트, 상자형파렛트
포장용기	포장모듈치수 (KS A 1002)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자루, 캔, DRUM
랙	1100 1100	산업용랙 자동창고
파렛트 트럭	1100 1100	수동식, 전동식
컨베이어	1100 1100	롤러컨베이어, UL수직컨베이어
파렛타이저	1100 1100	고상식, 저상식, 로봇식
파렛트트럭	1100 1100	유동력, 무동력
트럭(적재함)	1100 1100	일반화물, 밴보디

3. 물류표준인증 기준내용

1) 인증대상 품목 심사

○ 물류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대상 품목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현장에 대한 현장심사와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물류표준인증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사후관리를 위해)에 당해 사용설비가 인증설비임을 확인(인정) 받아야 한다.

○ 물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 사용설비가 인증설비로 표시 받기 위해서는 제품검사를 받아야한다.

① 현장심사

○ 물류표준인증기관(현장심사요원)은 인증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물류표준인증을 받은 기업이 표준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현장(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서가 제출되면 현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현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요원(2~3명)을 편성하고 2일 이내의 기간동안 출장하여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품검사

○ 현장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며 제품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동일한 생산롯트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를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한다.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은 KS A 3151 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른다.

○ 제품검사 담당자는 인증기준 및 검사기준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제품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한다.

1. 인증기관장이 승인한 검사기준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규격
4. ISO등 국제규격에 의한 검사기준

○ 제품검사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품검사 기준은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

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설비 심사

○ 물류표준인증기관은 표준인증마크를 표시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대해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발생될 시에는 당해설비가 인증설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은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용설비들이 인증마크표시 제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검사는 전수확인 또는 표본 확인을 실시한다. 표본 확인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물류표준인증기관은 물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 사용설비를 표준설비로 인증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 사용설비의 제품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은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에 따라 한다.

2) 제품검사기관

① 제품검사기관의 지정

○ 물류표준인증을 위한 제품검사를 수행하는데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중에서 인증기관장이 지정토록 한다.

② 제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품검사를 담당할 검사원과 검사설비를 갖춘 공인시험기관

○ 제품검사기관이 대상품목의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수한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험검사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

③ 심사결과 보고

제품검사기관은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 성적서와 제품검사 판정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비용

○ 물류표준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 이외에 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는 동 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류표준인증위원회

① 구성

○ 물류표준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술품질원에 물류표준인증위원회를 설치한다.

○ 인증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의 생산자, 사용자, 기관 및 단체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인증품목을 관리하는 담당관 중 기술품질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능

물류표준인증위원회는 다음내용을 심의한다

- 인증대상품목의 심사기준 적정성 여부
- 제품검사 결과의 적정성 및 표준인증여부
-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 인증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확정
-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 기타 물류표준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

4) 물류표준실무위원회

① 구성

○ 물류표준인증대상 품목의 현장심사, 제품검사 및 사용자 심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품질원에 물류표준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 실무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의 생산자, 사용자, 기관 및 단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인증품목을 관리하는 담당관 중 기술품질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능

물류표준 실무위원회는 다음내용을 심의한다.

- 표준인증신청 서류검토
- 인증대상여부
- 현장(생산공장 또는 설치 및 사용장소)실사 여부
- 기타 물류표준인증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5) 물류표준인증설비의 지원

인증기관장은 물류표준인증 설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2. 물류관련 장비의 구입이나 설치시 자금 융자
3. 외화 대부 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4.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 하자 보증
5.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6. 품질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기술 및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실시

6) 인증업체와 인증품목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2. 이의 신청을 받는 경우
3. 사업체의 양도 및 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의 변동으로 제품의 품질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품질의 성능 등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유통 표시제품을 조사하는 원칙으로 하며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생산여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생산여건 변동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 인증기관장은 인증업체와 인증품목에 대하여 인증취소,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① 인증시정보완

○ 사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결함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② 인증사용정지

○ 사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서 인증마크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현장심사결과 평점이 합격수준에 미달하거나 제품검사 결과 기준미달사항이 중 결함인 경우
- 보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보완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보완명령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인증사용취소

○ 사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취소할 수 있다.

-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사용정지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품목에 대하여 다시 사용정지 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인증업체의 재심사

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표준마크 인증취득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공고할 수 있게 한다.

○ 규격 및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제품규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물류장비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제품규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결론

물류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대내외적 물류기능간의 통합화를 확보함으로써 기업물류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업무에 대한 협력강화로 물류비 절감과 물류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물류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서 물류기기 생산업체에서는 생산의 일정규모의 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으로 고객확보가 용이할 것이며, 사용자(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품질과 구입비가 저렴하며, 일관물류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물류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한국산업규격의 유닛로드시스템(ULS)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T-11형 표준파렛트와 정합화할 수 있는 표준설비 임을 인증함으로써 물류표준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시켜 물류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